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07가단63970 손해배상(자)

원 고 1. 이○○ (51 [REDACTED])
대구 수성구 범어동 [REDACTED]

2. 장○○ (56 [REDACTED])

3. 이□□ (79 [REDACTED])
원고 2, 3의 주소 대구 북구 산격동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보험 주식회사
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
대표이사 [REDACTED]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08. 5. 29.

판 결 선 고 2008. 6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이○○에게 90,733,361원, 원고 장○○에게 88,633,361원, 원고 이□□에게 2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. 12. 22.부터 2008. 6. 19.까지는 연 5%, 2008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들이, 2/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이○○에게 143,340,092원, 원고 장○○에게 140,340,092원, 피고 이□□에게 4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. 12. 22.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책임의 근거

(1) 인정사실

진○○은 2006. 12. 22. 01:24경 경기 94아1126호 대형 화물차(이하 ‘이 사건 화물차’라 한다.)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29.8km 지점 도로 4차로상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,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이◇◇ 운전의 대구 28마 3038호 마티즈 승용차(이하 ‘이 사건 승용차’라 한다.)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 한다.). 이로 인하여 이◇◇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.)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

하였다. 원고 이○○, 장○○, 이□□은 각각 망인의 부, 모, 동생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○○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갑 2의 1, 2, 3, 갑 3, 갑 6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(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책임의 제한

을 2의 3 내지 23, 을 3, 강○○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전방은 갓길, 후방은 중앙분리대 쪽을 향한 채 우측으로 약 20° 정도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고,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실,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, 사고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차량의 통행이 뜸한 01:24경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망인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(시속 50km) 이하로 운행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,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,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%로 참작하여, 피고의 책임을 70%로 제한한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(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,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).

가. 망인의 일실수입

(1) 직업, 소득 및 가동연한

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되, 2006. 12. 22.부터 2007. 8. 31.까지는 58,883원, 2007. 9. 1. 이후는 60,547원을 각 일용노임으로 인정(원고들은, 망인의 월 소득을 망인이 2006. 4.부터 2006. 9.까지 근무한 [REDACTED]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받은 월 평균임금인 1,481,583원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위 평균임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)

(2) 생계비 : 월 수입의 1/3 공제

나. 장례비(원고 이○○) : 3,000,000원

다. 과실상계 : 피고의 책임비율 70%

라. 위자료

망인의 성별, 연령, 직업, 가족관계, 이 사건 사고 경위, 진○○이 원고 이○○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3,000,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망인에게 30,000,000원, 원고 이○○, 장○○에게 각 3,000,000원, 원고 이□□에게 2,000,000원 인정

마. 상속관계 : 망인의 재산을 원고 이○○, 장○○가 각 1/2지분 비율로 상속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.

판사 임기환 _____

별지 생략